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등〉
■ 이용우의원(의안번호 제1356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3
2.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 표시 의무화	6
※ 참고자료: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8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개정안은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물소비효율등급 등) ① ----- ----- ----- ----- 물소비 효율 등급----- ----- -----.

‘물 사용기기1)’는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있으며,

현행법 제16조2)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

1)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2) 「수도법」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3)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단순한 물 사용량 수치(L) 표시만으로는 해당 기기의 물 소비 효율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 대신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가 물소비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가적 수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물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4)의 효율관리기자재 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준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등급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물소비효율등급 기준과 부칙의 적용례 신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	
<u><신 설></u>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물소비효율등급의 표시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준 2.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 기준 3. 소비효율 또는 물 사용량의 표시 4. 소비효율 등급 기준 및 등급 표시 5. 소비효율 및 사용량 측정방법 6. 그 밖에 물 사용기기의 물소비효율등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물 소비 효율등급 산정 체계 마련
<u><신 설></u>	부칙 제2조(물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 명확화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 표시 의무화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6조(물소비효율등급 등) ① ----- ----- ----- 물소 비효율 등급----- ----- ----- --. ②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여야 한다.

‘절수설비⁵⁾’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변기 등 설비로서

5)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현행법 제15조⁶⁾에 따라 건축주,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함.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물 사용량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15조제5항⁷⁾은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2의⁵⁸⁾는 ‘단위시간 또는 회당 물 사용량’ 등 절수설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8

6)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 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3)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제1호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별표 1 비고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준모

텔"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정보

- 1) 절수등급
-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예시 1) 1등급(수도꼭지) (예시 2) 우수등급(수도꼭지) (예시 3) 1등급(변기)



다. 표시방법

-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